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8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6가단5247707 부당이득금

원 고 [redacted]

피 고 1. [redacted]구

2. [redacted]시

3. [redacted]구

4. [redacted]구

5. [redacted]

변 론 종 결 2017. 3. 23.

판 결 선 고 2017. 4. 1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 피고 [redacted]구는 721,080원, 피고 [redacted]시는 28,603,320원, 피고 [redacted]구는 199,290원, 피고 [redacted]구는 101,970원, 피고 [redacted]은 78,583,24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8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([redacted]세무서)는 A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A 소유의 [redacted]시 [redacted]구 B아파트 [redacted]동[redacted]호에 관하여 2013. 6. 27.과 같은 해 8. 27. 압류등기를 각 마쳤는데, 이후 2015. 4.경 금천세무서에서 관악세무서가 분리 개청되었으나 그에 따른 위 압류등기의 처분청 변경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.

나.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를 마친 원고([redacted]세무서)의 공매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. 2. 19. 공매공고등기를 마치고 공매절차를 개시하면서 원고(국세청)에게 배분요구종기를 2016. 4. 4.까지로 하는 공매대행 및 공매통지를 하였으며, 원고([redacted]세무서)는 위 공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국세 등 75,082,46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.

다.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. 8. 4.자로 위 공매에 따른 배분할 금액 431,421,150원을 1순위 집행비용으로 13,844,890원, 2순위 [redacted]구에 300,590원, 3순위 [redacted]은행(근저당권자)에 46,982,214원, 4순위 C(임차인)에 180,000,000원, 5순위 원고[redacted]세무서)에 75,082,460원, 6순위 피고 [redacted]구에 354,630원, 같은 6순위 피고 [redacted]시(피고 관악구 이관분)에 28,715,380원, 7순위 피고 동작구에 245,640원, 같은 7순위 피고[redacted]구에 139,050원, 8순위 피고 [redacted]에 78,612,810원, 9순위 피고 [redacted]구에 412,800원, 10순위 A(소유자)에 6,730,686원으로 배당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거나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나 제1, 2호증, 을마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8

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[redacted]세무서에게 교부청구(공매)통지를 누락함으로써 A가 체납한 국세를 이관받은 [redacted]세무서는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여 선순위 압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,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각 배당된 금액 중 원고([redacted]세무서)가 배당받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.

살피건대,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,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,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,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.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,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,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(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를 받은 원고는 최종적으로 75,082,460원을 교부 청구하여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진 사실을 알 수 있고, 이와 달리 원고의 소관 처분청에 불과한 금천세무서와 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8

악세무서의 업무 비협조로 일부 국세체납액에 대한 교부 청구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안동범